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43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박은정 · 정춘생 · 김재원
강경숙 · 이해민 · 진선미
김준형 · 박지원 · 서왕진
이성윤 · 신장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4.26.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임.

이에 2019. 12. 31.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군사법원법은 개정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군사법원법 또한 형사소송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안 제178조, 안 제255조제1항제1

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 중 “하면”을 “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255조제1항제1호 중 “수사”를 “수색.”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32조의2 또는 제238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8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 군사 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와 제119조제2항에 따른 군사법원 의 서기, 법원사무관등이 구속 영장을 집행할 경우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 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 피고인 을 수색할 수 있다.	제178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 ----- ----- ----- -----한 때에는 <u>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u> <u>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u> <u>우에 한정하여</u> ----- ----- ----- ----- -----.
제255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 분)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 은 제232조의2·제232조의3· 제238조 또는 제248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영장 없이 다 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 다. 1. 다른 사람의 주거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가옥, 건조	제255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 분) ① ----- ----- ----- ----- ----- ----- ----- ----- -----.
	1. ----- -----

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 에서의 피의자 <u>수사</u> <<u>단서</u> <u>신설</u>>	----- ----- <u>수색. 다만, 제2</u> <u>32조의2 또는 제238조에 따</u> <u>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u> <u>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u> <u>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u> <u>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u> <u>때에 한정한다.</u>
2. (생 략) ② · ③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